



이 사실 자료는 근로자 여러분을 보호하는 뉴욕주 법률의 개요입니다. 이 법률을 감독하는 뉴욕주 노동부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임금 착취로부터 보호합니다. 뉴욕주 어디서든 근로에 종사한다면 서류 미비자, 이민자, 망명 신청자라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시간당 최저 임금과 아래에 나열된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은 필수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무 시간당 최소한의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패스트푸드 직원, 네일샵 직원, 팁을 받는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위치	최저 임금 (기준일: 2024/01/01)	팁을 받는 서비스 직원* (기준일: 2024/01/01)	팁이 있는 식품업 서비스 근로자* (기준일: 2024/01/01)
뉴욕시	\$16.00/시간	\$13.35 현금 임금 \$2.65 팁 크레딧	\$10.65 현금 임금 \$5.35 팁 크레딧
Long Island 및 Westchester	\$16.00/시간	\$13.35 현금 임금 \$2.65 팁 크레딧	\$10.65 현금 임금 \$5.35 팁 크레딧
뉴욕주의 그 외 지역	\$15.00/시간	\$12.50 현금 임금 \$2.50 팁 크레딧	\$10.00 현금 임금 \$5.00 팁 크레딧

뉴욕주 법은 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 등 일부 업계의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충분한 팁을 받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직원이 당일 팁으로 시간당 평균 5달러("팁 크레딧")를 벌었을 경우 시간당 10달러("현금 임금"이라고 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음식 서비스 종사자**로는 대기 직원, 바텐더 및 버스 운송사 직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배달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팁을 받는 서비스 직원**은 레스토랑 주차 대행이나 가사도우미 등 관례적으로 팁을 받는 기타 직원들입니다.

네일살롱, 세차장, 주차 대행 직원, 미용사 등 기타 모든 비접객업 종사자는 팁을 받더라도 반드시 최저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

대부분의 직원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당 급여율의 절반을 받아야 합니다.

식사 시간

뉴욕주의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특정 시간 근무 후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30분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급 빈도

뉴욕주 법에 따르면 육체 근로자는 매주 급여를 받아야 하며, 사무직 및 기타 근로자는 한 달에 최소 두 번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에 대한 통지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매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급여 명세서)
- 급여 통지, 휴가, 보험 등 시간 및 급여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급여율 및 급여일 통지
- 해고 통지는 해고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유급 병가

뉴욕주의 모든 민간 부문(비정부) 근로자는 해당 주의 병가 및 안전 휴가법을 따릅니다. 즉, 몸이 불편하면 휴가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양과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당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트타임 또는 계절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보복

고용주의 잠재적인 문제나 불법 활동을 신고하기가 두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 사항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귀하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반 사항을 신고해도 고용주는 귀하를 해고하거나, 급여 또는 근무 시간을 삭감하거나, 다른 위치로 재배치하거나 강등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조치를 취하거나, 신고하거나, 추방하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산재 보상

업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고용주가 시민권 및/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 보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 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수입이 적은)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고 부분적인 임금 대체 비용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cb.ny.gov 를 방문하거나 877-632-4996 에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제출

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근로자가 받을 임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미지급 임금

- 근무한 전체 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자금 부족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을 경우
- 팁 전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사전 예고 없이 급여 요율이 감소한 경우

미린 임금 보충 수당

- 고용주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속했지만 휴가 수당, 휴일 수당, 보너스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최저 임금/초과 근무 수당

- 고용주가 귀하에게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
- 고용주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외 기타 불만 제기 조건

- 고용주가 의무 식사 시간, 휴무일, 급여 명세서, 급여 통지서, 적시 임금 지급을 미이행했을 경우 또는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상대로 부정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

불만 사항 양식

- 영어: dol.ny.gov/labor-standards-complaint-form-ls223
- 알바니아어: dol.ny.gov/lis223al-albanian-labor-complaint-form
- 아랍어: dol.ny.gov/lis223ar-arabic-labor-complaint-form
- 벵골어: dol.ny.gov/lis223bn-bengali-labor-complaint-form
- 중국어: dol.ny.gov/lis223c-chinese-labor-complaint-form
- 프랑스어: dol.ny.gov/lis223f-french-labor-complaint-form
- 그리스어: dol.ny.gov/lis223g-greek-labor-complaint-form
- 아이티크리올어: dol.ny.gov/lis223hc-haitian-creole-labor-complaint-form
- 힌디어: dol.ny.gov/lis223h-hindi-labor-complaint-form
- 이탈리아어: dol.ny.gov/lis223i-italian-labor-complaint-form
- 일본어: dol.ny.gov/lis223j-japanese-labor-complaint-form
- 한국어: dol.ny.gov/lis223k-korean-labor-complaint-form
- 폴란드어: dol.ny.gov/lis223p-polish-labor-complaint-form
- 포르투갈어: dol.ny.gov/lis223pg-portuguese-labor-complaint-form
- 러시아어: dol.ny.gov/lis223r-russian-labor-complaint-form
- 스페인어: dol.ny.gov/lis223s-spanish-labor-complaint-form
- 우르두어: dol.ny.gov/lis223ur-urdu-labor-complaint-form
- 이디시어: dol.ny.gov/lis223y-yiddish-labor-complaint-form

작성된 청구 양식을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NYS DOL, Division of Labor Standards
State Office Campus
Building 12, Room 266B Albany, NY 12226

만약 귀하께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1-888-469-7365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